

#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21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이유

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안전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을 변경함

1)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

⇒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

2) 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과 실제 경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취지에 맞게 변경

나.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(안 제3조)

1) 변경 : 일비 ⇒ 참석수당

2) 신설 : 심사수당

3) 지급제외 : 거창군 소속 공무원, 거창군의회 의원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2. 5.~2. 24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)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

##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위원회”란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수당)**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(대면회의에 한정한다)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전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(서면보고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.

**제5조(여비)**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「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제3조제2항에

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사를 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